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추가〉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590호, 제2200592호)

2024. 8.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5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용만 · 김병기 · 강준현 · 강훈식 · 김남근 · 이강일
이훈기 · 김현정 · 박상혁 · 민병덕 · 조승래 · 이인영
이정문 · 한준호 · 서미화 · 백승아 · 이수진 · 박수현
이언주 · 정준호 · 민형배 · 오세희 · 박희승 · 김영환
양부남 · 김성환 · 조인철 · 이재관 · 이광희 · 조 국
최민희 · 이용우 · 위성락 · 전현희 · 문금주 의원(35인)

2) 제 안 일 : 2024. 6. 18.

3) 회 부 일 : 2024. 6. 19.

※ 의안번호 : 59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위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용만 · 김병기 · 강준현 · 강훈식 · 김남근 · 이강일
이훈기 · 김현정 · 박상혁 · 민병덕 · 조승래 · 이인영
이정문 · 한준호 · 서미화 · 백승아 · 이수진 · 박수현
이언주 · 정준호 · 민형배 · 오세희 · 박희승 · 김영환
양부남 · 김성환 · 조인철 · 이재관 · 이광희 · 조 국
최민희 · 이용우 · 위성락 · 전현희 · 문금주 의원(35인)

2) 제 안 일 : 2024. 6. 18.

3) 회 부 일 : 2024. 6. 19.

※ 의안번호 : 59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위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용 전에 그 자질 및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려는 것임.

[표-1]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3. (생략) ③ ~ ⑥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 ----- <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u> ----- ----- ----- -----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 (생략)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u>국가인권위원회</u>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위 원장-----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¹⁾으로,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²⁾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정무직(장관급)³⁾ 공무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국민의 권익보호,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 예방 등으로 국민의 권리·권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 시 독립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국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게 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으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를 참고

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임.

로 추가할지 여부는 대상공직의 직급 및 역할,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⁴⁾.

또한,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⁵⁾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과 함께 개별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동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⁶⁾의 심사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이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포함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임.

4) 참고로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이 아님.

5)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6)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참고로, 제20대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⁷⁾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대안반영폐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된 사례가 있었음.⁸⁾

문 의 처
02)6788-5015

-
- 7)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8264),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8492)
- 8) 2018년 8월 27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를 기다리기로 하였음.
- 둘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고충민원 조사대상기관에 검찰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의견(검찰의 준수법적 처분 및 수사 등에 대해 행정구제절차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음.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도입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제17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
제17대국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제17대국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제19대국회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에 따라 인사청문 근거 마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